

제 정 : 2024. 5. 21

2024

공정거래
자율준수편람

SAMSUNG SDS CP(Compliance Program)

삼성에스디에스 주식회사

부당지원행위

I 의의

1. 개념

- 부당지원행위란, 특수관계인 또는 다른 회사에 대하여 부당하게 자금·자산·인력·상품용역 등을 제공하거나 상당히 유리한 조건으로 거래하거나, 거래상 실질적인 역할이 없는 특수관계인이나 다른 회사를 매개로 거래함으로써 특수관계인 또는 다른 회사를 지원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 대기업집단에 의한 경제력집중의 유지 및 확대를 방지하고 기술력, 경영능력과 무관한 방법으로 경쟁상 우위를 차지하는 것을 예방하기 위하여 우리나라에서 독특하게 마련하고 있는 제도로, 특히 계열회사에 대하여 지원행위가 이루어지는 경우 주된 규제의 대상이 되어 왔습니다.
- 특히, 당사와 같이 대기업(총수 있는 공시대상 기업집단 소속 기업)에 속하는 회사의 경우, '13년 신설된 '특수관계인에 대한 부당한 이익제공 등 금지' 규정이 적용되어, 특수관계인 및 일정 범위 계열회사에 대한 지원행위를 하는 경우 공정거래저해성에 대한 판단 없이 제재될 수 있습니다.

2. 연혁

- 공정거래위원회는 부당지원행위와 관련하여 다음의 폐해가 발생한다는 점을 지적하며, 규제를 하고 있습니다.
 - ① 지원객체가 속한 시장에서 독립기업에 비하여 기술력이나 경영능력과 무관하게 경쟁상 우위를 차지할 수 있게 된다.
 - ② 기업집단 전체의 부실을 초래할 수 있다.
 - ③ 국민경제 차원에서 경제력집중의 주요 원인으로서 부실계열회사의 지원은 사회후생의 감소와 국가경쟁력의 약화를 가져올 수 있다.
- 이러한 부당지원행위 관련 규제는 '96.12월 제5차 공정거래법 개정에서 처음 반영되었으며, '13. 8월 제20차 공정거래법 개정에서 "특수관계인에 대한 이익제공 등" 행위에 대한 규제사항이 추가되었습니다.
- 본 장에서는 부당지원행위와 특수관계인에 대한 이익제공 관련 법률상 요건, 주요 법 위반 유형, 법 위반 시 제재사항, 예방을 위한 행동지침 등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II 부당지원행위의 성립요건

1. 지원행위의 존재

- 공정거래법상 지원행위는, 지원주체가 지원객체에게 직·간접 제공하는 경제적 급부의 정상가격이 그에 대한 대가로 지원객체로부터 받는 경제적 반대급부의 정상가격보다 높게 이루어져, 결국 지원주체가 지원객체에게 '경제상 이익을 제공'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2. 지원행위의 상당성

- 부당한 지원행위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지원주체가 지원객체에게 경제상 이익을 제공할 뿐만 아니라, 그 거래 조건이 '상당히' 유리하여야 합니다.
- 당해 거래의 조건이 상당히 유리한지 여부는 급부와 반대급부의 차이는 물론 거래규모와 지원행위로 인한 경제상 이익, 지원기간, 횟수, 시기, 지원행위 당시 지원객체가 처한 경제적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됩니다.

3. 지원행위가 부당하게 경쟁을 제한하거나, 경제력 집중이 야기되는 등으로 공정한 거래를 제한하여야 합니다. ('공정거래 저해성')

- '공정거래 저해성'이란, 지원주체가 지원행위를 함으로써 지원객체가 속한 관련시장에서 경쟁이 저해되거나 경제력 집중이 야기되는 등으로 공정한 거래가 제한되는 것을 말합니다.
- 당해 지원행위가 '공정거래저해성'을 가지는지 여부는 지원주체와 지원객체와의 관계, 지원행위의 목적과 의도, 지원행위 전후의 지원객체의 시장점유율 추이, 관련시장의 경쟁여건 등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공정한 거래질서의 관점에서 개별적으로 판단됩니다.

- 당해 지원행위에 단순히 사업경영상의 필요가 있거나, 거래상의 합리성 내지 필요성이 있다는 사유만으로는 공정거래저해성이 부인되지 않습니다.

공정거래
저해성 예시

- 지원행위로 인하여 지원객체가 일정한 거래분야에 있어서 유력한 사업자의 지위를 형성·유지·강화할 우려가 있는 경우
- 지원객체의 다른 경쟁사업자가 해당 거래분야에서 배제될 우려가 있는 경우
- 지원객체가 해당 지원행위로 인하여 경쟁사업자에 비하여 경쟁조건이 상당히 유리하게 되는 경우
- 지원객체가 속하는 일정한 거래분야에 있어서 해당 지원행위로 인하여 지원객체의 퇴출이 저해되거나, 타사의 신규진입이 어려워지는 경우 등

III 부당지원행위의 유형

1. 특수관계인 또는 다른 회사에 가지급금·대여금·인력·부동산·유가증권·상품·용역·무체재산권 등을 제공하거나, 상당히 유리한 조건으로 거래하는 행위

- 지원주체가 지원객체와의 사이에서 거래시 정상적인 거래에서 제공되는 대가보다 상당히 낮거나 높은 대가로 제공 또는 거래하는 행위를 통하여 과도한 경제상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가 대표적입니다.
- 또한, 지원주체가 자금·자산·인력·상품·용역 등을 상당한 규모로 제공 또는 거래하여 과도한 경제상 이익이 지원객체에게 제공된다면 해당 행위도 포함됩니다.

상당히 유리한 조건의 거래 행위 예시

- 지원주체가 상품·용역거래와 무관하게 선급금 명목으로 지원객체에게 무이자 또는 저금리로 자금을 제공하는 행위
- 지원주체가 단독으로 또는 지원객체와 공동으로 개발한 결과를 지원객체에게 무상양도하여 지원객체가 특허출원을 하도록 제공하는 행위
- 지원객체에게 공장·매장·사무실을 무상 또는 낮은 임대료로 임대하는 행위
- 지원주체가 지원객체와의 사이에 상품·용역을 합리적인 근거 없이 정상가격보다 상당히 낮거나 높은 대가로 거래하는 행위
- 업무지원을 위해 인력을 제공한 후 인건비는 지원주체가 부담하는 행위.
- 지원주체가 지원객체에게 각종 업무를 비경쟁적인 수의계약의 방식을 통하여 유리한 조건으로 대부분 몰아주는 행위

2. 다른 사업자와 직접 상품·용역을 거래하면 상당히 유리함에도 불구하고, 거래상 실질적인 역할이 없는 특수관계인이나 다른 회사를 매개로 거래하는 행위. (이른바 '통행세' 거래)

- 지원주체가 거래상 역할이 없거나 미미한 지원객체를 거래단계에 추가하거나 거쳐서 거래하도록 하여 과도한 경제적 행위를 제공 하는 행위가 대표적입니다.
- 또한, 거래상 지원객체의 역할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 역할에 비하여 과도한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도 포함됩니다.

- 특히, 지원객체를 추가하여 거래하면서 내부적으로 필요최소한의 분석·검증작업을 거치지 않았거나, 지원객체를 추가하는 것이 통상적인 거래관행이나 과거 거래행태상 이례적이라는 등의 사정이 있는 경우 부당지원행위로 판단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통행세 거래 예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실제 거래에서 계약상 지원객체의 역할을 지원주체가 수행하거나 지원주체와 지원객체의 역할을 중복하여 수행하는 행위 - 거래상 역할이 없는 중간 유통단계로 지원객체를 추가하는 행위
----------------------	---

※ 특수관계인에 대한 부당한 이익제공금지(총수일가 사익편취행위 금지)

- 당사는 동일인(총수)이 지배하는 공시대상기업집단 소속회사로, 공정거래위원회는 특수관계인(동일인 및 그 친족) 및 동일인이 단독으로 또는 다른 특수관계인과 합하여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20이상의 주식을 소유한 국내 계열회사 및 그 자회사에 대하여 일정한 행위를 할 경우, 위 11.3.항의 '공정거래 제한성' 판단 없이 곧바로 제재할 수 있다는 입장입니다.
- 해당 규정에 따라서 금지되는 행위는 아래와 같습니다.
 - 정상적인 거래에서 적용되거나 적용될 것으로 판단되는 조건보다 상당히 유리한 조건으로 거래하는 행위
 - 자금, 자산, 상품, 용역, 인력을 정상적인 거래에서 적용되는 것보다 상당히 낮거나 높은 대가로 제공하거나 거래하는 행위를 의미합니다.
 - 다만, 특수관계인이 아닌 자와의 정상적인 거래에서 적용될 것으로 판단되는 조건과의 차이가 100분의 7미만이고, 해당 연도 거래총액이 50억원(상품·용역의 경우에는 200억원) 미만인 경우 적용 제외됩니다.
 - 회사가 직접 또는 자신이 지배하고 있는 회사를 통하여 수행할 경우 회사에 상당한 이익이 될 사업기회를 제공하는 행위
 - 다만 회사가 ① 해당 사업기회를 수행할 능력이 없는 경우, ② 사업기회 제공에 대한 정당한 대가를 지급받은 경우, ③ 기타 합리적인 사유로 사업기회를 거부한 경우는 적용 제외
 - 특수관계인과 현금이나 그 밖의 금융상품을 상당히 유리한 조건으로 거래하는 행위
 - 다만, 특수관계인이 아닌 자와의 정상적인 거래에서 적용될 것으로 판단되는 조건과의 차이가 100분의 7 미만이고, 해당 연도 거래총액이 50억원 미만인 경우에는 적용 제외됩니다.

- 사업능력, 재무상태, 신용도, 기술력, 품질, 가격 또는 거래조건 등에 대한 합리적인 고려나 다른 사업자와의 비교 없이 상당한 규모로 거래하는 행위
 - 다만, 당사자 간 상품·용역의 해당 연도 거래총액이 200억원 미만인면서, 거래상대방 평균매출액의 100분의 12 미만인 경우 적용 제외됩니다.
 - 또한 특수관계인과의 거래가 효율성 증대, 보안성, 긴급성 등 일정한 요건을 갖춘 경우 적용 제외될 수 있습니다.

□ 부당지원행위 관련 규제와의 관계

- 특수관계인에 대한 부당한 이익제공금지 규제와 부당지원행위 규제는 규제목적, 규제대상 및 규제내용 등에 있어 차이가 있어 별개의 규제에 해당하므로, 어느 한 쪽에 해당되지 않더라도 나머지 조항 위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부당지원행위와 특수관계인에 대한 부당한 이익제공금지 비교]

구 분	부당지원행위	특수관계인에 대한 부당한 이익제공금지
관련 규정	공정거래법 제45조 제1항 9호	공정거래법 제47조
규제내용	다른 회사를 부당한 방법으로 지원하는 행위 금지	총수일가 특수관계인에게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 금지
지원주체	모든 사업자	동일인(총수)이 지배하는 공시대상기업집단 소속회사
지원객체	모든 회사(계열회사 포함)	총수일가가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20이상의 주식을 소유한 국내 계열회사/ 그 자회사
금지행위 유형	<ul style="list-style-type: none"> ① 정상가격에 비해 상당히 유리한 조건의 거래 ② 거래상 실질적인 역할이 없는 회사를 매개로 거래 (소위 '통행세' 거래) 	<ul style="list-style-type: none"> ① 정상가격에 비해 상당히 유리한 조건의 거래 ② 사업기회 제공 ③ 합리적 고려나 비교 없는 상당한 규모의 거래
안전지대 여부	해당없음	<ul style="list-style-type: none"> ① 상당히 유리한 조건의 거래 : 거래조건 차이 7% 미만, 연간 거래금액 50억원(상품·용역 200억원) 미만 ② 상당한규모의 거래 : 연간거래총액 200억원 미만, 거래상대방 평균매출액 12% 미만
부당성	지원행위로 인하여 관련 시장에서 경쟁이 저하되거나 경제력 집중이 야기되는 등 공정한 거래가 저해될 우려가 있는 여부	변칙적인 부의 이전 등을 통해 특수관계인을 중심으로 경제력이 집중 유지·심화할 우려가 있는지 여부

IV 법 위반 시 제재 사항

1. 행정적 제재

□ 시정조치와 과징금

- 당해 행위의 중지, 시정명령을 받은 사실의 공표, 기타 시정을 위해 필요한 조치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 과징금은 지원주체 및 지원객체의 3년 평균 매출액의 100분의 10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부과될 수 있습니다.
- 매출이 없거나 산정이 곤란한 경우에는 40억원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부과될 수 있습니다.

2.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

- 사업자는 부당한 지원행위 또는 특수관계인에 대한 부당한 이익제공행위를 통하여 피해를 입은 자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피해자가 입은 손해에 대하여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을 부담합니다.

3. 벌 칙

-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억원 이하의 벌금
-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5천만원 이하의 벌금
 - 시정조치 등에 응하지 않은 경우
- 그 법인 또는 개인에 대해서도 처벌이 가능합니다.

V 예방을 위한 임직원 행동지침

1. 계열회사와의 거래 전 검토사항

- 계열회사와 거래 시에도 원칙적으로는 경쟁입찰의 방법에 따라 거래상대방을 선정하고, 불가피하게 수의계약을 할 경우 수의계약의 사유가 적정한지(효율성, 보안성, 긴급성) 검토하여 결정합니다.
- 계열회사와의 관계에서 수의계약이 가능한 예외적인 경우는 아래와 같습니다.
 - 효율성 증대효과가 있는 거래 :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거래로서, 다른 자와의 거래로는 달성하기 어려운 비용절감/ 판매량 증가/ 품질개선/ 기술개발효과가 명백한 경우
 - 상품의 규격·품질 등 기술적 특성상 전후방 연관관계에 있는 계열회사 간의 거래로서 해당 상품의 생산에 필요한 부품·소재 등을 공급 또는 구매하는 거래
 - 회사의 기획·생산·판매 과정에 필수적으로 요구되는 서비스를 산업 연관성이 높은 계열회사로부터 공급받는 거래
 - 주된 사업영역에 대한 역량 집중, 구조조정 등을 위해 회사의 일부 사업을 전문화된 계열회사가 전담하는 경우 그 일부 사업과 관련하여 그 계열회사와 하는 거래
 - 긴밀하고 유기적인 거래관계가 오랜 기간 지속되어 노하우 축적, 업무 이해도 및 숙련도 향상 등 인적·물적으로 협업체계가 이미 구축되어 있는 거래
 - 거래목적상 거래에 필요한 전문 지식 및 인력 보유 현황, 대규모·연속적 사업의 일부로서의 밀접한 연관성 또는 계약이행에 대한 신뢰성 등을 고려하여 계열회사와 하는 거래
 - 보안성이 요구되는 거래 :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거래로서, 다른 자와 거래할 경우 영업활동에 유용한 기술, 정보 등이 유출되어 경제적으로 회복하기 어려운 피해를 초래하거나 그러한 우려가 있는 경우
 - 전사적 자원관리시스템, 통신기반시설 등 필수시설의 구축·운영, 핵심기술의 연구·개발·보유 등과 관련된 경우
 - 거래 과정에서 영업·판매·구매 등과 관련된 기밀 또는 고객의 개인정보 등 핵심적인 경영정보에 접근 가능한 경우
 - 긴급성이 요구되는 거래 : 경기급변, 금융위기, 천재지변, 해킹 또는 컴퓨터 바이러스로 인한 전산시스템 장애 등 회사의 외적 요인으로 인한 사업상 긴급한 필요에 따른 불가피한 거래

- 계열회사와의 거래 시 '내부거래 업무 매뉴얼'에 따라 유형별 사전 검토 및 승인절차를 필수적으로 거쳐야 합니다.
 - 대규모내부거래(준법감시위원회 설명, 내부거래위원회 결의)
 - 계열회사와의 자본총계 또는 자본금 중 큰 금액의 5% 이상 또는 거래금액 100억원 이상의 자금, 유가증권, 자산거래
 - 동일인 등 지분 20% 이상 국내 계열회사(자회사 포함)와의 분기 단위 자본총계 또는 자본금 중 큰 금액의 5% 이상 또는 거래금액 100억원 이상의 상품·용역거래
 - 특수관계인 부당이익제공금지 대상 거래(수익계약 사유 및 가격 적정성 조사, 관계사거래 사전심의)
 - 동일인 등 지분 20% 이상 보유 국내 계열회사(자회사 포함)와의 매입거래 중 수익계약
 - 주요 주주거래(상법 제398조, 이사회 승인)
 - 당사 지분 10%이상 주주 또는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하는 주주와의 모든 거래
 - 특수관계인 거래(상법 제542조의 9, 준법감시위원회 설명/ 이사회 승인)
 - 계열회사와의 ① 건별 거래금액인 본사 매출총액 1% 이상인 거래, ② 연간 거래총액이 본사 매출총액 5% 이상인 거래

2. 거래조건 관련

- 매출/ 매입거래 시 정당하고 합리적인 근거를 가지고 가격을 협상하도록 하고, 특히 계열회사인 경우 비계열회사의 경우와 비교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가격을 높거나 낮게 산정하지 않도록 유의합니다.
- 계열회사 또는 타 회사와의 사이에 정당한 사유 없이 부동산 등 자산을 무상으로 사용하도록 제공하거나 제공받지 않도록 합니다.
- 상품·용역거래와 무관하게 계열회사 또는 타 회사에게 무이자 또는 낮은 금리로 자금을 제공하지 않도록 합니다.
- 계열회사 또는 타 회사와의 사이에 무상으로 인력을 제공받거나 제공받지 않도록 합니다.

3. 통행세 관련

- 거래구조상 중간 단계에 계열회사 또는 타 회사를 포함하여 거래할 경우, 해당 회사의 거래상 역할을 합리적으로 분석하여 의사결정하고, 적절한 대가를 지급하도록 합니다.

- 공급사로부터 직접 제품을 구매할 수 있고 그것이 당사에 유리한 경우라면 불필요한 중간 단계를 추가하여 구매하지 않도록 합니다.

VI 부당지원행위 관련 Do & Don'ts

다음의 내용은 부당지원행위 관련하여 권장 또는 허용되는 행위와 금지되는 행위를 정리한 것으로, 계열회사와의 거래를 진행할 경우 사전 확인이 필요합니다.

Do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특정 계열회사와의 거래가 지속적으로 이루어지는 경우, 해당 계열회사와의 거래조건에 관하여 다른 계열회사/ 대외 고객사와의 거래조건과 차이점이 있는지 검토하고 거래현황을 확인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 거래상대방을 선정할 때에는 원칙적으로 입찰방식을 통하되, 예외적으로 수의계약으로 계열회사를 선정해야 하는 경우에는 거래 상대방 선정에 대한 객관적이며 합리적인 이유를 마련하고 다른 사업자와의 비교·평가 등을 통하여 수의계약이 필요함을 확인해야 합니다. - 계열회사와의 거래가 다른 비계열사와의 거래와 비교했을 때, 가격과 거래조건에 있어 차별적이지 않고, 차이가 있더라도 그 차이에 대하여 합리적인 설명이 가능해야 합니다. - 계열회사와 거래할 경우 계열회사와 거래해야 하는 사유로 계열회사가 대체불가한 역량/ 기술을 보유하고 있는지 여부와 거래를 진행해야 하는 사유로 효율성/ 보안성/ 긴급성을 확인해야 합니다. - 계열회사와 거래를 개시한 이후에도 정기적으로 계열회사와의 거래가 계속적으로 필요한지 여부, 다른 회사를 선정할 수 있는지 여부, 거래조건의 타당성 등을 검토해야 합니다.
Don't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거래상대방을 선정함에 있어서 계열회사라는 이유 또는 계속해서 거래해 왔다는 이유만으로 내부 의사결정이나 검토없이 계열회사를 선정해서는 안 됩니다. - 계열회사와 거래해야 할 특별한 사유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경쟁입찰 등 공정한 절차를 진행하지 않고 지속적으로 수의계약으로 계열회사를 거래상대방으로 선정하면 안 됩니다. - 계열회사와의 거래조건을 합리적인 사유없이 다른 회사와의 거래조건과 다르게 설정해서는 안 됩니다. - 계열회사와 거래를 개시하였다고 하더라도 추가적인 검토없이 계속하여 계열회사와 동일한 거래조건으로 계속적으로 거래하면 안 됩니다.

Ⅶ 질의응답

1. 부당지원행위 관련

[질문 1]

자회사와의 거래도 부당지원행위에 해당될 수 있는지?

[답변 1]

모회사와 자회사도 법률적으로는 별개의 독립한 거래주체이므로, 상당히 유리한 조건 등의 거래를 통해 경제상 이익을 제공하고 그로 인해 관련시장에서 경쟁을 제한할 우려가 있는 경우, 부당지원행위에 해당됩니다. 대법원은 모회사가 100% 주식을 소유하고 있는 회사(완전자회사)와의 관계에서도 부당지원행위가 성립됨을 인정한 바 있습니다. (대법원 2004. 11. 12. 선고 2001두2034 판결)

[질문 2]

상품·용역의 납품이 지연된 경우, 지체상금을 받지 않는 행위도 부당지원행위에 해당되는지?

[답변 2]

상품·용역의 납품이 지연되면, 계약상 또는 상법상 법정이자 상당액의 지체상금을 청구하여야 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면제하여 주는 행위는 거래상대방의 자금력을 제고하여 경쟁사업자에 비해 유리한 지위를 얻게 하는 등 지연이자 상당액의 자금을 부당지원하는 행위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대법원 2007. 1. 25. 선고 2004두7610판결)

[질문 3]

소규모 프로젝트의 경우, 납기가 급박한 상황에서 일의 완성을 위하여 계열회사 또는 협력업체에 당사의 인력을 무상지원하여도 무방한지?

[답변 3]

정당한 사유 없이 당사의 인력을 무상 지원하는 것은 부당지원행위에 해당할 수 있으며, 부당지원행위는 거래규모를 불문하고 지원행위와 공정거래제한성 등 요건을 갖춘 경우 성립하므로, 납기가 급박한 특수한 사정으로 불가피하게 당사의 인력을 지원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해당 인력 지원에 대한 정당한 대가를 지급받는 것으로 합의한 후 인력을 투입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2. 특수관계인에 대한 부당한 이익제공행위 관련

[질문 1]

계약 당시 이익을 내지 못하거나 단기간 적자가 예상되는 사업기회의 경우, 당사가 수행하지 않고 특수관계인에 해당하는 계열회사로 하여금 수행하도록 제공하여도 무방한 것인지?

[답변 1]

사업기회 제공 당시에는 이익을 내지 못하는 사업기회라고 하더라도, 사후적으로 영업이익을 낼 것이라는 예측이 가능한 경우에는 '상당한 이익이 될 사업기회'에 해당할 수 있으므로 주의하여야 합니다.

[질문 2]

경쟁입찰의 절차를 거쳐 계열회사와 거래하는 경우에는 부당지원행위 및 부당한 이익제공행위에 해당하지 않는 것인지?

[답변 2]

경쟁입찰의 절차를 거쳤다는 이유만으로 계열회사와의 거래가 당연히 적법한 거래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예컨대, 외형상으로 경쟁입찰의 절차를 거쳤지만 실질적으로는 계열회사가 낙찰받기 위한 형식적 과정에 불과하거나, 합리적인 근거 없이 계열회사에 유리한 낙찰 기준을 적용한 경우에는 법 위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질문 3]

서비스 품질 유지를 위하여 계열회사에 독점적으로 업무를 위탁하는 것은 효율성 증대효과를 위한 예외사유로 인정될 수 있는지?

[답변 3]

비계열회사와 거래하더라도 계약서에 서비스 품질약정을 명시하는 방법 등으로 품질을 유지할 수 있으므로, 해당 사유만으로는 업무 위탁이 가능한 예외사유로 인정받기 어려울 것입니다.

Ⅷ 위반 사례

1. 서울고등법원, 전자랜드에 대한 부당한 지원행위 제재 관련 공정거래위원회 승소 판결. ('23. 7월)

□ 개요

- 7.20일, 서울고등법원은 SYS홀딩스와 SYS리테일(구 전자랜드)이 제기한 시정명령 및 과징금납부명령 취소소송에서 공정거래위원회의 승소를 선고하였습니다.
- '21.12월, 공정거래위원회는 기업집단 "고려제강" 소속 SYS홀딩스가 자신의 부동산을 무상 담보로 제공하여 계열회사인 전자랜드가 '09.12월 ~ '21.11월 기간동안 저리로 대규모 자금을 대출받을 수 있도록 한 행위에 대하여 시정명령과 과징금 총 23.7억원을 부과한 바 있습니다.

□ 법원의 판단

- SYS홀딩스 등은 공정거래위원회가 부당지원행위로 판단한 담보제공행위와 관련하여 SYS홀딩스의 기업분할 이전부터 이루어져 왔던 담보제공을 계속한 것에 불과하여 공정한 거래질서를 저해할 우려가 없거나 미미하다는 등의 주장을 하였습니다.
- 그러나, 서울고등법원은 원래 하나의 법인격이었다고 하더라도 인적 분할을 통하여 법인이 분리된 이상 별개의 법인격으로 보아야 하고, 지원행위의 주체와 객체가 원래 하나의 회사에서 분할된 회사들이란 사정을 고려하여 부당한 지원행위가 적용되지 않는다면 공정거래법의 입법취지를 몰각시킬 우려가 있다고 지적하며 이 사건 담보제공행위는 공정거래법상 부당한 지원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 시사점

- 계열회사라는 이유만으로 담보 무상 또는 저리 제공 등 부당한 지원행위를 할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부당한 지원행위로 제재를 받을 수 있음이 명확하므로, 계열회사와 거래할 경우 제3자와 거래할 때 대비 거래조건에 유리하거나 불리한 조건에 해당하는지를 다시 한 번 검토한 후 정상가격을 유지하여야 할 것입니다.

2. 공정거래위원회, 기업집단 OCI의 부당내부거래 제재('23. 7월)

□ 개요

- 7. 6일, 공정거래위원회는 기업집단 OCI소속 SGC에너지가 계열사이자 삼광글라스 소그룹의 지배구조 정점에 있는 삼광글라스를 부당하게 지원하고, 특수관계인에게 부당한 이익을 제공한 행위에 대하여 시정명령 및 과징금 110억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 지원행위 배경

- '16년부터 OCI 내 삼광글라스 소그룹의 지배구조 정점에 위치한 삼광글라스가 주력산업의 포화 및 소퇴 등으로 영업손실이 나타나고 성장의 한계가 우려되기 시작하였습니다.
 - 이에 따라 삼광글라스 소그룹의 전략기획 전반을 담당하는 이테크건설의 전략기획실은 소그룹 계열사가 참여하는 TF를 구성하여 SGC에너지의 유연탄 구매 및 물류업무를 삼광글라스에 위탁할 것을 기획하였습니다.
 - 방식은 경쟁입찰 방식을 취하고, SGC에너지의 물량 1/2가량만을 삼광글라스로 부터 공급받고 삼광글라스의 SGC에너지 向 유연탄 관련 매출을 '17년 부터 3년간 300억, 500억, 700억으로 점진적으로 확대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 법 위반 내용

- SGC에너지는 자신의 발전소에 사용될 유연탄 구매를 위하여 '17. 5월 ~ '20. 8월까지 삼광글라스 등 공급업체를 대상으로 유연탄 구매입찰을 15회 실시하였으며, 발주처의 지시 또는 직접적인 개입 등 변칙적인 방법으로 총 13회 낙찰되었습니다.
- (발열량 상향 입찰참가) 삼광글라스는 5차례 입찰에서 해외 유연탄 공급사가 보증하는 발열량을 임의로 높여 최저가 지명경쟁입찰에서 4회 낙찰되었습니다.
- (입찰실사자료 제공) 삼광글라스는 10차례 입찰에서 발주처로 부터 입찰운영단가표, 타사 견적서, 입찰계획 등 자료를 제공받아 입찰하여 9회 낙찰되었습니다.
- 그 결과 삼광글라스는 SGC에너지 向 입찰물량의 46%인 180만톤(약 1,800억원) 규모의 유연탄을 공급하여 64억원의 영업이익을 취득하였습니다.
 - ※삼광글라스 지분비율 고려 시 특수관계인이 22억원의 부당이득을 취득한 것으로 판단

□ 시사점

- 공정거래위원회는 대기업집단 내 계열사의 구매력을 바탕으로 타 계열사가 새로운 사업을 시작할 수 있도록 지원해 주고, 사실상 형식적인 입찰을 통하여 물량을 몰아주는 행위에 대하여 제재하였습니다.
- 특히, 형식적으로 경쟁입찰을 통하여 계열사와 거래하였다 하더라도 변칙적인 방법을 통해 계열사가 낙찰받을 수 있도록 해 준 행위가 부당내부거래에 해당될 수 있다는 점을 확인하였습니다.
- 당사도 입찰 참여 또는 입찰 공고시 계열사(자회사 포함)를 대상으로 입찰 관련 자료를 요청하거나 제공할 경우, 공정거래법 위반으로 제재받을 수 있음을 유의해야 하겠습니다.

3. 기업집단 한국타이어 소속 계열회사의 부당지원행위 및 특수관계인에 대한 부당한 이익제공행위 제재('22.11월)

□ 개요

- '22.11월, 공정거래위원회는 기업집단 한국타이어 소속회사가 계열회사로부터 타이어몰드를 고가로 구매한 행위에 대하여 시정명령과 과징금 총 80억 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 법 위반 내용

- 한국타이어앤테크놀로지는 기업집단 소속 계열회사인 한국프리스이션웍스에 대하여, '14. 2월부터 '17.12월까지 원가가 과다 계상된 가격산정방식을 통하여 타이어몰드를 구매하는 방식으로 한국프리스이션웍스를 지원하였습니다.
- 위 가격산정방식에 따라 지원객체의 제조원가가 실제 원가보다 과다 반영되어, 지원객체는 타이어몰드 판매로 40% 이상의 매출 이익률을 실현하였습니다.
- 지원행위로 인하여 지원객체의 경영성과가 크게 개선 (영업이익율13.8%→32.5%)되고, 국내 타이어몰드 제조시장에서의 지위가 강화(시장점유율 43.1% → 55.8%) 되었습니다.

□ 시사점

- 부당내부거래를 통해 계열회사를 지원한 행위로서, 부당지원행위 및 특수관계인에 대한 부당한 이익제공행위에 중복 해당하는 행위에 대하여 공정거래법의 두 규정 모두 적용하여 제재하였습니다.

4. 이랜드리테일의 이랜드월드에 대한 자금 및 인력지원행위 제재('22. 4월)

□ 개요

- '22. 4월, 공정거래위원회는 이랜드리테일이 계열회사인 이랜드월드에게 변칙적인 방식으로 자금 및 인력을 지원한 행위에 대하여 시정명령 및 과징금 40.8억원을 부과하였습니다.

□ 법 위반 내용

- 이랜드리테일은 '16.12월 이랜드월드 소유 부동산을 인수하는 계약을 체결하면서 계약금으로 560억원을 지급한 후, 6개월 후 계약을 해지하여 계약금을 돌려받는 방식으로 자금을 무상 대여하였습니다.
- 이랜드리테일은 '14.7월 'SPAO'브랜드를 이랜드월드에게 이전하였으나, 자산 양도대금 511억 원을 3년 가까이 분할 상환하도록 유예하면서도 지연이자를 수령하지 않았습니다.
- 이랜드리테일은 '13.11월~'16.3월 기간 동안 이랜드월드 대표이사의 인건비를 대신 지급하는 방법으로 인력을 지원하였습니다.

□ 시사점

- 무리한 사업확장에 따른 위기를 극복하기 위하여 계열회사 간 변칙적인 자금지원 등 불공정한 경쟁 수단을 활용하여 시장 지위를 유지하려고 한 위법행위를 제재하였습니다.
- 기업집단 이랜드가 공시대상기업집단으로 지정된 기간 동안의 행위에 대하여는, 부당지원행위 이외에 특수관계인에 대한 부당한 이익제공행위 위반을 중복 적용하여 제재하였습니다.

IX 체크리스트

항 목	확인결과
계열회사 거래 시 경쟁입찰의 방법에 의하여 거래하였는가?	
계열회사와 수의계약의 방법으로 거래하는 경우 효율성/ 보안성/ 긴급성 요건을 충족하였는가?	
계열회사와의 거래 시 '내부거래 업무 매뉴얼'에 따라 유형별 사전 검토 및 승인절차를 준수하였는가?	
계열회사 거래 시 정당하고 합리적인 근거에 따라 계산된 가격으로 거래상대방과 협의하였는가?	
PJT 수행 중 당사의 계열회사에 대하여 당사의 인력 지원이 불가피한 경우 사전 약정을 통하여 인력 지원에 대한 정당한 대가를 합의한 후 인력을 투입하였는가?	
당사의 책임 없는 거래상대방의 납기 지연에 대하여 계약상/ 상법상의 지체상금 또는 지연이자를 부과하였는가?	
공급자로부터 직접 구매하는 것이 가능하고, 당사의 이익에 부합하는데도 계열회사를 중간 매개체로 하여 거래하는가?	
공급자로부터 직접 구매할 수 없거나 비용이 증가하는 사정 등으로 계열회사를 통하여 거래하는 경우, 해당 회사의 역할을 합리적으로 분석하여 정당한 대가를 지급하였는가?	
계열회사에 대하여 무상으로 자금/ 자산을 지원받거나, 지원하는 거래를 하지는 않았는가?	

SAMSUNG SDS | 2024

서울특별시 송파구 올림픽로 35길 125(신천동)

<http://www.samsungsds.com>